

2025년도 『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』 모집 공고

우수한 로봇 기술 및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4월 14일
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(목적) 로봇 스타트업의 수요처에서의 실증·검증을 통한 제품·서비스의 레퍼런스 확보, 창업 프로그램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장 진출 지원

- (지원대상) 창업 후 3년 이내의 로봇기업*

* 로봇기업 : 로봇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
(제조업용 로봇, 전문서비스용 로봇, 개인서비스용 로봇, 로봇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, 로봇시스템, 로봇임베디드 제품, 로봇관련 서비스)

* 신청자격은 '(붙임1)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' 기준 확인

- (선정규모) 경진대회 방식을 통해 최대 1.7억원, 최소 7천만원 지원

선정과제 수			국비 지원규모	비고
7개사	1등	1개	1.7억원	기업당 민간부담금 3천만원 매칭 필수
	2등	3개	1.2억원	
	3등	3개	0.7억원	

*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 국비 차등 지급

- (선정규모) 7개사 내외
- (지원기간) 협약일 ~ '25.12.31 (약 6개월 내외)
- (지원내용) ① 제품·시장검증 비용, ② 기타 창업지원비용(교육, 전시) 등 총사업비 내에서 선정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

제품·시장검증
수요예상처에서의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등

+

기타 창업 지원
사무공간, 장비활용, 교육프로그램, 전시회 운영 및 참관, 투자자 미팅 등

2. 신청자격

○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

*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: 2022년 4월 14일 ~ 2025년 4월 14일

- 개인사업자 /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고,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

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
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
* 세부내역은 (붙임)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확인

-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자가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, 탈락, 선정·협약 취소 가능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○ 선정 제외

※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3년('22년~'24년)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3. 지원규모 및 내용

○ (지원규모) 기업당 국비 최대 1.7억원 지원 (민간부담금 3천만원 필수 부담)

-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며, 기업당 최대 지원 국비는 1.7억원

* 사업비 구성(안)

총사업비	국비	민간 부담금
200백만원	170백만원	30백만원

* 지원시 총사업비 200백만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,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 수정 사업계획서로 향후 협약 진행

- (요약) 기업당 국비 최대 1.7억원을 지원하며, 총사업비 내에서 선정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

- (사용범위) 시장검증에 필요한 로봇 제품 제작비 및 검증 비용,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·개선, 판로 및 마케팅비,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

* 단 환급이 가능한 세금(부가세, 관세 등)은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

*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

○ 지원 프로그램 (공통)

- 진흥원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인·기관 투자자 IR, 데모데이 등

- 진흥원 로봇 펀드 조성 시 투자 운용사 대상 IR 기회 제공 등

○ 지원 프로그램 (선택)

구분		주요내용
인프라	사무공간	▶ 기업별 개별 사무공간 제공
	장비활용	▶ 진흥원 보유 장비
자금	사업화	▶ 시제품 제작,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·개선, 판로 및 마케팅 등
교육, 컨설팅	로봇교육	▶ 로봇직업교육훈련센터(구미, 안산) 교육과정 수강
네트워크	로봇기업	▶ 연관 로봇기업(국내외 대기업·중견기업)과의 네트워크 연계
		- 스타트업 기업의 로드맵 수립 지원 및 상호 협력 촉진을 통한 사업화 지원

* 기타 진흥원에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통지원 프로그램 제공 가능

4. 지원 및 선정절차

□ (공고기간) 2025. 4. 14(월) ~ 2025. 5. 15(목) 16:00까지

□ (접수기간) 2025. 5. 12(월) ~ 2025. 5. 15(목) 16:00까지

□ (신청방법) 사업관리시스템(www.kiria.org/pms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○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(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)

※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kiria.org/pms) '공지사항' 내 매뉴얼 참고

○ 문의사항

구분	담당자	전화번호	메일	
사업 관련	산업육성지원팀	최은미	053-210-9572	eunmi@kiria.org
시스템 관련	기획예산팀	조승미	053-210-9916	smcho@kiria.org
	고객센터		070-4047-7287	

○ 주의사항

- ① 사업관리시스템(www.kiria.org/pms) '과제신청'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
-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
-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

□ 제출 서류 및 부수

구분	제출서류	양식	비고
1	사업계획서	○	1부(날인본)
2	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/ 사업자등록증(개인)	X	기관별 각 1부 (원본)
3	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(감사의견 포함) 및 표준재무제표(표지 포함) * 개인사업자 : '종합소득세 신고확인(홈택스)' 제출	X	기관별 각 1부(사본가능)
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X	기관별 각 1부 (원본)
5	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	○	기관별 각 1부 (원본)
6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기관별 각 1부 (원본)
7	참여의사 확약서	○	기관별 각 1부 (원본)
8	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	○	기관별 각 1부 (원본)

* 회계관련 직전년도('24년)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'22년, '23년 자료 제출

5. 평가방법 및 기준

□ (평가방법) 총 2단계 평가(서류심사→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 선정

서류심사	발표평가 (사업비 심의)	결과 통보	협약
재무건전성 평가 (서면평가)	발표 및 질의응답	선정 결과 통보	선정기업과 협약 진행
'25. 5월	'25. 5월 말	'25. 6월	'25. 6월

* 발표평가는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, 공개평가 진행 예정
(PT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 / 별도 PT 양식 없음)

* 평가일정 및 세부절차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○ (서류심사) 재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무 건전성 평가(서면 평가)

- 하기 재무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발표평가 진행

* 재무평가 기준표 (사전지원제외 기준)

구분	기준
1	기업의 부도
2	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*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
3	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*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
4	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
5	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6	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7	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,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

○ (발표평가) 기업의 보유역량 및 지원 타당성,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 후 질의응답 진행

- (평가방법) 창업기업 대표자(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대면평가 예정

- 평가표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보유역량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의 보유 인력, 보유 인력의 노하우 및 전문성 ○ 보유 기술 수준, 핵심기술의 특허 보유 여부 ○ 창업 준비(제품 보유 여부, 경과 등) 및 전문성(업계 경력 등) ○ 사업 수행 의지의 적극성 및 구체성 	20
타당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차별성 ○ 과제 및 추진목적의 구체성과 필요성 ○ 최종목표,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○ 목표 구현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등 	40
효과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사업을 통한 성장 가능성 ○ 투자유치 및 후속사업 확보 가능성 	40
합 계		100

* 평가점수는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

6. 관련 법령 및 규정 등

관련 법령

○ 「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
관련 규정

○ 「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」

기타

○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

※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,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

7. 기타 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
-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
-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-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, 진흥원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
- 본 사업은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PMS), 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 필수 적용 대상 사업임
- 사업 공고기간 중 권역별 상담회 진행 예정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 업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창업아님		
	이종	창 업	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